

자율적 관리를 위한  
**무인점포 안전관리**  
**가이드라인**

2024. 12.

**관계기관**

- 문화체육관광부
- 중소벤처기업부
- 식품의약품안전처
- 소방청
- 경찰청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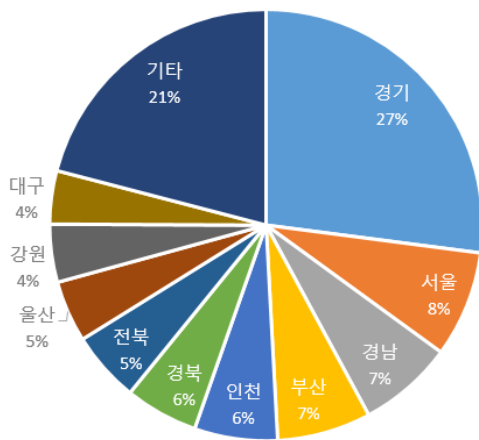
<b>1. 국내 무인점포 현황과 위험요소</b> .....	<b>4</b>
1. 국내 무인점포 현황 .....	4
2. 주요 위험 요소 .....	4
3. 위험 및 사고 사례 .....	5
<b>2. 무인점포 화재·범죄·사고 예방 가이드라인</b> .....	<b>6</b>
1. 총칙 .....	6
2. 관리자의 의무 일반 .....	6
3. 업종별 의무사항 .....	8
4. 화재 예방 사전 조치 .....	8
5. 범죄 예방 사전 조치 .....	12
6. 피난 안내도 .....	13
<b>3. 무인점포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</b> .....	<b>15</b>
1. 무인 판매업소 .....	15
2. 무인 사진관 .....	19
3. 무인 노래방 .....	23
4. 무인 빨래방 .....	27
5. 무인 스터디카페 .....	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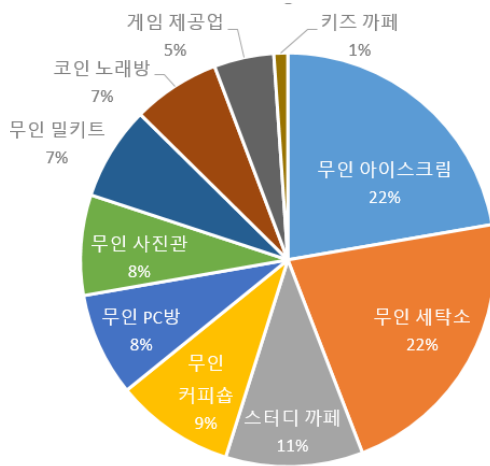
# 국내 무인점포 현황과 위험 요소

## 1. 국내 무인점포 현황

- ▶ '24년 기준, 전국적으로 약 9천 개의 무인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(소방청 자체조사)
- ▶ 지역별로는 경기, 서울, 경남 순이며, 도심지 내에서 대부분 운영 중
- ▶ 업종별로는 무인 아이스크림, 무인 세탁소, 스터디 카페 순이며,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 중



지역별 분포비율



업종별 분포비율

## 2. 주요 위험 요소

- ▶ 최근 10년 무인점포 관련 언론사 뉴스 검색결과('15.1.~'24.6.) 범죄(611건, 90%), 화재(51건, 7.5%) 위험이 가장 높음  
(범죄 유형) 절도(88.9%), 경범죄(7.4%), 방화(0.8%)로 구분됨  
(화재 유형)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가 대부분

### 3. 위험 및 사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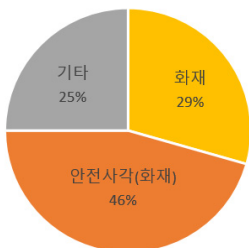
- 사례①** 무인 사진관에 전원이 상시 연결된 머리 인두(고데기)로 인한 화재
- 사례②** 셀프 빨래방의 세탁기·건조기에 라이터, 기름 등 이물질 투입으로 인해 폭발·화재
- 사례③** 스터디 카페 등 입·출입 제한 시스템이 화재 시 고장으로 출입문 개폐 불가

【 상위 10개 광역지자체 및 업종분류별 무인점포 수(소방청 조사결과) 】

지자체		무인점포수(개소)	업종분류	무인점포수(개소)
계		9,030	계	9,030
1	경기	2,444	무인 아이스크림	2,011
2	서울	719	무인 세탁소	1,975
3	경남	642	스터디 카페	967
4	부산	633	무인 커피숍	840
5	인천	561	무인 PC방	730
6	경북	494	무인 사진관	708
7	전북	478	무인 밀키트	662
8	울산	416	코인 노래방	618
9	강원	392	게임 제공업	421
10	대구	361	키즈 카페	98
11	기타	1,890		

#### 무인점포 안전관리 언론보도

- 최근 10년 주요 언론사 50종 뉴스 (재난연 R-Scanner, '15.1.1.~'24.6.30.)



#### 《범죄 외 주요 보도내용》

- ◎ 무인점포 관련 15,742건 중 문제점·사고 관련 기사 682건
  - 범죄(611건) : 절도(543), 경범죄(45), 방화(5) 순
  - 범죄를 제외하면, 화재 내용이 주(화재우려 31건, 화재사고 20건)
- ※ (기타) 10대 아지트 된 무인점포, 배달기사 출판 장소 무인점포, 결제오류인데 절도범 취급, 디지털 소외되는 노인 등

## 1. 총칙

### ▣ 목적

무인점포 화재·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은 무인점포의 관리주체의 의무,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무인점포의 화재·안전사고와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▣ 적용대상

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관리주체 및 관리인력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 출입이 자유로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.

### ▣ 적용범위

이 가이드라인은 무인점포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무인점포 사업주 등 관리주체는 해당 무인점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2. 관리자·업종별 의무 일반

- ▶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시설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(이하 관계인)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12조에 따라 소방설비, 경보설비, 피난구조설비 등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▶ **소매점, 빨래방**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관리업자를 통한 소방시설 정기점검 의무를 가진다.

- ▶ **무인사진관, 오락시설**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통, **숙박업소**는 「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를 가진다.
- ▶ 「공중위생관리법」 **숙박업**, 「건축법 시행령」의 숙박시설로 분류된 **무인 숙박업소**의 경우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(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), 「소방시설법 시행령」에 따른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▶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**노래방**은 「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방염대상물품(의자, 테이블 등)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###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**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**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  - **특정소방대상물**(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) :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슈퍼마켓과 일회용품 등 소매점, 휴게음식업, 노래연습장, 세탁소, 탁구장·체력단련장·골프연습장, 사진관, 표구점, 학원 등의 시설 중 일정 규모 미만인 것들을 통칭함

- ▶ 영업자가 원재료를 세척, 절단 등 처리를 하거나 조리 후 포장하여 무인형태로 판매하는 영업(밀키트 판매점 등)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으로 「식품위생법」에 해당하는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▶ 기계(벤딩머신, 로봇팔)가 만드는 커피 등을 소비자가 직접 결제하고 테이블 등의 공간에서 섭취하는 형태의 경우 영업신고 대상으로 「식품위생법」에 해당하는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▶ 가공식품을 그대로 진열하는 무인판매 업소(아이스크림, 과자 등)는 자유업으로 영업신고 대상은 아니나, 「식품위생법」제3조에 따라 식품 등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식품위생법

**제3조(식품 등의 취급)** ① 누구든지 판매(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·제조·가공·사용·조리·저장·소분·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.

〈생략〉

**제36조(시설기준)**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, 가공업, 운반업, 판매업 및 보존업
2. 기구 또는 용기·포장의 제조업
3. 식품접객업

〈생략〉

**제40조(건강진단)**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〈생략〉

**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**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,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〈생략〉

※ 식품 관련 세부 사항은 ‘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(식약처, ’24.5)’ 참조  
(경로) 식약처 홈페이지 → 법령/자료 → 자료실 → 안내서/지침

## 3. 화재 예방 사전 조치

- ▶ 사업주는 폭발·화재 및 누출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,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, 해당 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

## 사업주 화재 예방 조치

- ▶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적용 점포는 원활한 피난을 위해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연동시켜 화재 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정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▶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.
- ▶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▶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▶ 난로 등의 화기나 전열기구 주변,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소화기를 두되,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▶ 소화기 상부 벽면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▶ 소화기는 지시압력계, 용기변형·손상 여부, 안전핀 및 봉인줄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▶ 소화기를 뒤집어 내용물이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바닥면 부식 여부 등을 6개월에 1회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.
- ▶ 조명 전원설비, 콘센트에 먼지 등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.
- ▶ 소방시설을 폐쇄·장애물 설치·임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▶ 열기를 이용해 머리를 손질하는 고데기는 사용 후 전원 자동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▶ 비상구 및 출입문 인근에는 물건 적치를 금지하여야 한다.

## 이용자 고지사항




- ▶ 업종별 무인점포 화재 발생사례를 안내하여, 이용자가 사전에 인지하고,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▶ 화재 발생 시, 초기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.
  - ① 119 화재 신고 ② 소화기, 소화전 초기 소화 노력 ③ 자체 진화 불가 시, 즉시 대피
- ▶ 빨래방 이용 시 라이터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세탁기 및 건조기에 넣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### 소방설비 및 비상구

#### ▶ 소화설비

소화기	자동 확산 소화기	간이스프링클러 설비
		
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 ② 설치기준 : 구획된 실(룸) 마다 설치 ※ 식용유를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		① 설치대상 : 밀폐구조 다중이용업소 ② 설치기준 : 화재안전기준(NFSC 103)

#### ▶ 경보설비

비상벨 설비	자동화재 탐지설비	가스누설경보기
		
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 ② 설치기준 : 구획된 실마다	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 ② 설치기준 수신기 : 영상음향장치 설치된 영업장 감지기 : 구획된 실마다	① 설치대상 : 가스사용 주방/난방 시설 설치 다중이용업소 ② 설치기준 LPG : 감지부를 바닥에서 30cm이내 LNG : 감지부를 천정에서 30cm이내

## ▶ 피난설비

피난기구	피난유도선
	
<p>① 설치대상 : 4층이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</p> <p>② 설치기준 : 위치·구조에 따라 완강기, 피난사다리, 구조대, 미끄럼대 등 적정기구 설치</p>	<p>① 설치대상 : 다중이용업소 내부통로 및 복도 있는 영업장(노래연습장 등)</p> <p>② 설치기준 : 내부통로 및 복도, 빛 내는 방식</p>
유도등/유도표지/비상조명등	휴대용 비상조명등
	
<p>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</p> <p>② 설치기준 : 출입구, 비상구, 복도 등에 설치</p>	<p>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</p> <p>② 설치기준 : 구획된 실마다 1개씩</p>

## ▶ 비상구



- ① 설치대상 : 모든 다중이용업소
- ② 설치기준 : 영업장마다 설치(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)
- 위치
    - 영업장 긴 변 길이가 1/2이상 떨어진 출입구 반대방향
    -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1/2이상 떨어진 곳
  - 규격 : 가로 75cm이상, 세로 150cm이상
  - 문 열림방향 : 피난방향
  - 문 재질 : 방화문 또는 불연재 문
  - 추락방지 안전조치 : 120cm이상 난간 또는 안전로프 2줄, 추락위험경고표지,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

## 4. 범죄 예방 사전 조치

### 사업주 범죄 예방 조치

- ▶ 입·출입 시 카드 태그, 전화 인증 등 시스템을 갖추어 사전 도난 및 불법 출입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▶ 점포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(지능형\*) CCTV 등 점포 감시가 수시로 가능한 범죄예방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.  
\* 시기술을 적용하여 고객 동작 분석을 통해 과격한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,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
- ▶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릴 수 있는 비상 경보 시스템과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인 방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- ▶ 필요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(범죄예방진단팀)에 요청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·개선방안 등을 진단받을 수 있다.

### 이용자 고지사항

- ▶ 계산대 또는 매대 근처에 양심 거울 설치, 절도 적발 사례 등을 안내하여 총동적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▶ 소규모 절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사형을 안내하여 처벌의 엄중함을 경고하여야 한다.

## 5. 피난 안내도

### 작성 요령

- ▶ 피난안내도는 계단, 비상구, 피난동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.
- ▶ 피난안내도는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.

### 내용 및 표시, 설치위치

- ▶ ‘화재시 피난요령’ 및 ‘소화기 사용요령’은 아래의 예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며, 해당 장소에 적절한 외국어를 병기하여 사용합니다.
- ▶ 비상구 표시는 계단입구 또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예시의 범례와 같이 표시합니다.
- ▶ 피난동선은 밝은 녹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며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또는 가장 가까운 피난경로를 작성합니다.
- ▶ 소화기 및 발신기 등 소방설비는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곳에 예시의 범례와 같이 표시합니다.
- ▶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쉽게 접근하여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.

- ▶ **크기** : A3(420×297mm)이상으로 하며, 400㎡미만인 경우 B4(364×257mm) 이상
- ▶ **재질** : 코팅한 종이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
- ▶ **구성** : 피난안내도 제목은 상단부 좌측에 건물명과 층수는 상단부 우측에 표기  
‘화재시 피난요령’과 ‘소화기 사용요령’은 픽토그램과 함께 중앙 좌측에 표기
- ▶ **바탕색** : 전체 바탕색은 노랑색 또는 흰색으로 하되, 상단의 띠는 적색으로 사용

- ▶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편집도안을 활용해 작성 (알림소식-공지사항)

##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

Standard  
Evacuation Diagram  
Guide Line



## 표준 피난안내도 예시(범례)

**피난안내도 제목 표기**  
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(AI)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

**'화재 시 피난요령' 표기**  
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(AI)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 
단, 필요에 따라 영문·방기 혹은 중문·방기, 일문·방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*'소화기 사용요령' 표기**  
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(AI)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.  
단, 필요에 따라 영문·방기 혹은 중문·방기, 일문·방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**건물명과 층수 표기**  
해당 건물의 명칭이나 압축명을 해당 층수와 함께 표기합니다.  
고유한 로고를 사용할 시 바탕색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
**피난평면도 표기**  
예시와 같이 피난동선 등을 빠르게 표기하여 해당 건물에 맞는 평면도를 넣으십시오.  
별도로 제공되는 예시화일(AI)의 워터마크 이미지를 사용하세요.  
※ 다음 페이지의 피난평면도 작성 Tip을 참조하세요!

**범례 표기**  
범례는 피난평면도와 함께 예시와 같이 표기하며, 조합이나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.  
단, 필요에 따라 영문·방기 혹은 중문·방기, 일문·방기 버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세로조합(예시화일에 첨부)



**예시화일(AI)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!**  
피난안내도 예시화일(AI)을 사용하면 쉽게 피난안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 
예시화일은 A3(420mmX297mm)와 B4(364mmX257mm)로 작성되었으며,  
해당 건물의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사용하십시오.  
※ 예시화일(AI)은 게시글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.

## 1. 무인 판매업소

점검 항목	점검결과	
	예	아니오
<b>1. 화재 예방 조치</b>		
<b>1-1 소방시설</b>		
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소화기) 소화기 주방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사용 기구 점검) 에어컨, 냉·온장고, TV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2. 범죄 예방 조치</b>		
<b>1-1 보안 시스템</b>		
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범죄 및 이상행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사전 예방) 계산대 또는 매대 근처에 양심 거울 설치, 절도 적발 사례 등 안내물 부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경비업체 가입)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시스템 및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 가입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 【 체크리스트 항목별 상세설명 】

### 1. 화재 예방 조치

#### 1-1 소방시설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

**해설**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주방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

**해설**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므로, 주방 및 주요기계 근처에 비치하여 초기 진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, ②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며,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입니다. 무인점포 특성 상 화재 발생시 유일한 소화수단은 스프링클러인 만큼,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

##### 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

**해설**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,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.  
설치 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, ②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m<sup>2</sup> 모든층입니다.  
무인점포 특성 상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경보설비는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만큼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설치하길 권장 합니다.

##### 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

**해설**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, 경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긴급상황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적재물 등은 비상 탈출경로에는 비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

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

**해설**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여야 대피 시 용이합니다.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

**해설** 화재 시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경보기 작동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연동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.

### 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**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수시로 관리하기 위해 CCTV가 필요합니다.  
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는 육안관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,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지능형 CCTV 설치를 권장합니다.

### 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

####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

**해설** 전기기구의 플러그 손상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합선 등 화재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.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.

### (사용 기구 점검) 에어컨, 냉·온장고, TV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

**해설** 설치 후 움직임이 적은 전기제품의 필터, 환풍팬 등에 쌓인 먼지는 화재 발생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므로,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하여야 합니다.

### 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

**해설** 시설 등 사용중인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점포를 보호하는 예방수단입니다.

## 2. 범죄 예방 조치

### 1-1 보안 시스템

#### 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

- 해설** 사전 인증 시스템은 출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,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며,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  
무인점포에서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를 권장합니다.

#### (지능형 CCTV) 범죄 및 이상행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- 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CCTV가 가장 최선입니다.  
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 만큼 육안관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 
지능형 CCTV는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주고, 소방·경찰 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.

#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# (사전 예방) 계산대 또는 매대 근처에 양심 거울 설치, 절도 적발 사례 등 안내물 부착 여부

- 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.  
이에, 계산대 등에 양심 거울, 적발 사례 등 안내물을 적극 부착하여 제3의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,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 받을 인지시켜 범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## (경비업체 가입)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시스템 및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 가입 여부

- 해설** 지능형 CCTV와 연동되어, 도난 및 기물 파손 시 경보를 울리거나 기물 파손, 이상 상황 감지 시 원격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## 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

- 해설** 매장 환경을 내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구성하고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

## 2. 무인 사진관

점검 항목	점검결과	
	예	아니요
<b>1. 화재 예방 조치</b>		
<b>1-1 소방시설</b>		
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소화기) 소화기 주방(방별)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사용 기구 점검) 사진기, 조명, 고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2. 범죄 예방 조치</b>		
<b>1-1 보안 시스템</b>		
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범죄 및 이상행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비상 경보)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경보 울리는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 【 체크리스트 항목별 상세설명 】

### 1. 화재 예방 조치

#### 1-1 소방시설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

**해설**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주방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

**해설**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므로, 주방 및 주요기계 근처에 비치하여 초기 진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, ②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며,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됩니다. 무인점포 특성 상 화재 발생시 유일한 소화수단은 스프링클러인 만큼,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

##### 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

**해설**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,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.  
설치 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, ②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m<sup>2</sup> 모든층입니다.  
무인점포 특성 상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경보설비는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만큼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설치하길 권장 합니다.

##### 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

**해설**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, 경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긴급상황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 
적재물 등은 비상 탈출경로에는 비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

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

**해설**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여야 대피 시 용이합니다.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

**해설** 화재 시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경보기 작동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연동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.

### 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**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수시로 관리하기 위해 CCTV가 필요합니다.  
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는 육안관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,  
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지능형 CCTV 설치를 권장합니다.

### 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

####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

**해설** 전기기구의 플러그 손상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합선 등 화재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.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.

### (사용 기구 점검) 사진기, 조명, 고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

**해설** 사진관 특성 상 조명, 고데기 등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습니다  
특히, 이용자가 고데기 사용 후 전원을 반드시 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화재 예방에 신경써야합니다.

### 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

**해설** 시설 등 사용중인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점포를 보호하는 예방수단입니다.

## 2. 범죄 예방 조치

### 1-1 보안 시스템

#### 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

- 해설** 사전 인증 시스템은 출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,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며,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  
무인 사진관 특성 상, 사전 예약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장 형태에 맞게 출입 인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.

#### (지능형 CCTV) 범죄 및 이상행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- 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CCTV가 가장 최선입니다.  
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 만큼 육안관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.  
지능형 CCTV는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주고, 소방·경찰 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.

#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# (경비업체 가입)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시스템 및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 가입 여부

- 해설** 지능형 CCTV와 연동되어, 도난 및 기물 파손 시 경보를 울리거나 기물 파손, 이상 상황 감지 시 원격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비상상황에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## 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

- 해설** 무인 사진관 특성 상 커텐으로 내부를 가리거나,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 
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, 상황에 맞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.

### 3. 무인 노래방

점검 항목	점검결과	
	예	아니요
<b>1. 화재 예방 조치</b>		
<b>1-1 소방시설</b>		
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소화기) 소화기 방별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경보시설) 방별 화재 경보기 설치 및 시각적 안내 장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방염물품 설치) 의자, 테이블 등 방염대상물품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사용 기구 점검) 스피커, 마이크, 노래방 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2. 범죄 예방 조치</b>		
<b>1-1 보안 시스템</b>		
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비상 경보)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경보 울리는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 【 체크리스트 항목별 상세설명 】

### 1. 화재 예방 조치

#### 1-1 소방시설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

**해설**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방별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

**해설**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므로, 노래방 방별 및 주요기계 근처에 비치하여 초기 진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, ②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며,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입니다. 노래방 특성 상 방별 구획된 경우가 많으므로, 방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

##### (경보시설) 방별 화재 경보기 설치 및 시각적 안내 장치 여부

**해설** 노래방 특성상 소음으로 인해 기존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노래 스크린에 화재 상황을 알려주거나, 시각적으로 화재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방 별로 설치하여 외부의 긴급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
##### 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

**해설**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,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. 설치 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, ②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m<sup>2</sup> 모든층입니다. 노래방 특성 상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경보설비는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만큼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설치하길 권장 합니다.

##### 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

**해설**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, 경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긴급상황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노래방 특성 상 구획이 많고, 탈출 동선이 복잡할 수 있어 적재물 등이 있을 경우 탈출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, 장애물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

**해설**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여야 대피 시 용이합니다.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

**해설** 화재 시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경보기 작동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연동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.

### (방염물품 설치) 의자, 테이블 등 방염대상물품 설치 여부

**해설**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방은 「소방시설법」 제20조에 따라 방염대상물품(의자, 테이블 등)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  
노래방 특성상 화재 발생시 확산 저지를 위해선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### 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**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CCTV가 가장 최선입니다.  
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 만큼 육안관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 
지능형 CCTV는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람을 주고, 소방·경찰 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.

### 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

####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

**해설** 전기기구의 플러그 손상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합선 등 화재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.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.

### (사용 기구 점검) 스피커, 마이크, 노래방 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

**해설** 노래방 특성 상 스피커, 노래방 기계 등 전기제품 사용이 많습니다.  
이에, 주기적으로 사용 기구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# 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

**해설** 시설 등 사용중인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점포를 보호하는 예방수단입니다.

## 2. 범죄 예방 조치

### 1-1 보안 시스템

#### 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

- 해설** 사전 인증 시스템은 출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,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며,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  
무인 노래방 특성 상, 10대 사용이 많으므로 심야시간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철저한 인증시스템 구비는 필수적입니다.

#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# (경비업체 가입)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시스템 및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 가입 여부

- 해설** 지능형 CCTV와 연동되어, 도난 및 기물 파손 시 경보를 울리거나 기물 파손, 이상 상황 감지 시 원격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비상상황에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 4. 무인 빨래방

점검 항목	점검결과	
	예	아니요
<b>1. 화재 예방 조치</b>		
<b>1-1 소방시설</b>		
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소화기) 소화기 주방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사용 기구 점검) 세탁기, 건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2. 범죄 예방 조치</b>		
<b>1-1 보안 시스템</b>		
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비상 경보)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경보 울리는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 【 체크리스트 항목별 상세설명 】

### 1. 화재 예방 조치

#### 1-1 소방시설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

**해설**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

**해설**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므로, 세탁기 및 건조기 근처에 비치하여 초기 진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, ②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며,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입니다. 빨래방 특성 상 좁은 면적 내에 많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

**해설**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,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.  
설치 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, ②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m<sup>2</sup> 모든층입니다. 빨래방 특성 상 연쇄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,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경보설비는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필수적이므로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설치하길 권장 합니다.

##### 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

**해설**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, 경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긴급상황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빨래방 특성상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상대적으로 단조로울 수 있으나, 주기적으로 장애물 비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.

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

**해설**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여야 대피 시 용이합니다.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

**해설** 화재 시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경보기 작동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연동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.

### 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**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CCTV가 가장 최선입니다. 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 만큼 육안관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지능형 CCTV는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람을 주고, 소방·경찰 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.

### 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

####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

**해설** 전기기구의 플러그 손상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합선 등 화재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.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.

### (사용 기구 점검) 세탁기, 건조기 등 전기제품 주기적 점검 여부

**해설** 빨래방 특성 상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, 누수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. 이에, 주기적으로 사용 전기제품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# 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

**해설** 시설 등 사용중인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점포를 보호하는 예방수단입니다.

## 2. 범죄 예방 조치

### 1-1 보안 시스템

#### 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

**해설** 사전 인증 시스템은 출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,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며,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

#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# (경비업체 가입) 이상 상황 발생 시 경보 시스템 및 출동 인력을 갖춘 경비업체 가입 여부

**해설** 지능형 CCTV와 연동되어, 도난 및 기물 파손 시 경보를 울리거나 기물 파손, 이상 상황 감지 시 원격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비상상황에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## (시야 확보)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과 내부의 조명을 밝게 유지 여부

**해설** 무인 빨래방 특성 상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며, 매장 주변의 조명도 밝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매장 상황에 따라 시야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.

## 5. 무인 스터디카페

점검 항목	점검결과	
	예	아니오
<b>1. 화재 예방 조치</b>		
<b>1-1 소방시설</b>		
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소화기) 소화기 주방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경보시설) 방별 화재 경보기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방염물품 설치) 테이블, 의자 등 방염대상 물품 사용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2. 범죄 예방 조치</b>		
<b>1-1 보안 시스템</b>		
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<b>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</b>		
(비상 경보)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경보 울리는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 【 체크리스트 항목별 상세설명 】

### 1. 화재 예방 조치

#### 1-1 소방시설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비치 여부

**해설**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 점포의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##### (소화기) 소화기 방별 및 주요 기계 근처 비치 여부

**해설** 화재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 초기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가지므로, 스타디카페 방별로 비치하는 등 초기 진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### (스프링클러) 스프링클러(간이 스프링클러 포함)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, ② 지하층·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<sup>2</sup> 이상인 층이며,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됩니다. 스타디카페 특성 상 방별 구획된 경우가 많으므로, 방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

##### (경보시설) 방별 화재 경보기 설치 여부

**해설** 스타디카페는 룸 형태의 구획이 많을 수 있어, 방별로 외부의 긴급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경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.

##### (자동화재 탐지설비)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여부

**해설**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,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설비입니다.

설치 대상은 ① 층수가 6층 이상 건축물은 모든 층, ②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m<sup>2</sup> 모든층입니다. 무인 스타디카페 특성 상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알려주는 경보설비는 화재 확산 방지와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만큼 의무대상이 아니어도 설치하길 권장 합니다.

##### (비상구) 비상구 및 탈출경로를 명확히 표시, 경로 내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 여부

**해설**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, 경로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긴급상황에서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스타디카페 특성 상 구획이 많고, 탈출 동선이 복잡할 수 있어 적재물 등이 있을 경우 탈출이 더 어려울 수 있으니, 장애물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경보기와 입·출입제한 시스템 연동 여부

**해설** 입·출입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점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여야 대피 시 용이합니다.

### (방염물품 설치) 테이블, 의자 등 방염대상 물품 사용 여부

**해설** 스터디 카페 특성상 테이블, 의자 등 물품이 많이 비치되어 있는 만큼 방염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, 화재 확산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.

### (입·출입제한 시스템) 화재 시 출입문 자동 개방 설정 및 작동여부 점검 여부

**해설** 화재 시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경보기 작동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연동하고, 주기적으로 작동여부도 점검하여야 합니다. 특히, 스터디카페의 경우 입퇴실 체크를 위해 입출입시스템을 많이 사용 합니다. 비상상황 발생 시 다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비상상황 발생시 출입문이 자동 개방될 수 있도록 설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
### (지능형 CCTV) 화재 자동 조기 감지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여부

**해설** 무인점포 특성 상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CCTV가 가장 최선입니다. 또한,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많은 만큼 육안관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지능형 CCTV는 AI, 영상인식,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, 도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을 주고, 소방·경찰 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능형 CCTV 설치를 적극 권장합니다.

### (전기 안전) ① 전기기계·기구의 전선, 플러그 등의 절연상태 및 손상 여부

#### ②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제한여부

**해설** 전기기구의 플러그 손상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전기합선 등 화재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.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.

### (유지 보수)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고장·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마련 여부

**해설** 시설 등 사용종인 제품의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,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점포를 보호하는 예방수단입니다.

## 2. 범죄 예방 조치

### 1-1 보안 시스템

#### (출입 인증) 매장 출입 시 카드, 전화 등 사전 인증 시스템 설치 여부

**해설** 사전 인증 시스템은 출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, 범죄 발생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며,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.

무인 스터디카페 특성 상, 10대 사용이 많으므로 심야시간 미성년자 출입에 대해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도 인증시스템 구비는 필수적입니다.

### 1-2 그 외 시설 및 환경 조성

#### (비상 경보)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 경보 울리는 비상 경보 시스템 설치 여부

**해설** 지능형 CCTV와 연동되어, 도난 및 기물 파손 시 경보를 울리거나 기물 파손, 이상 상황 감지 시 원격으로 경보를 울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비상상황에 사전 예방하여야 합니다.

## 관계기관 연락처

분야	기관명		연락처
총괄	행정안전부	예방안전제도과	044-205-4502
화재 및 소방	소방청	화재예방총괄과	044-204-7447
범죄 및 치안	경찰청	범죄예방정책과	02-3150-2546
체육시설	문화체육관광부	스포츠산업과	044-203-3120
소상공인	중소벤처기업부	디지털소상공인과	044-204-7837
식품	식품의약품안전처	식품관리총괄과	043-719-2061